

##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6. 7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6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설 명 자 : 내무과장 이 수 철
- 나. 개 정 사 유
  - 새마을이 날에(매월 1일) "자랑스런 군민"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은 의무조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 - "표창한다"를 "표창할 수 있다"로 개정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자구수정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### 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### 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- 7. 첨 부 :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6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새마을의 날(매월 1일)에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은 의무조항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필요성이 있을때에만 표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골자

- "표창한다"를 "표창할 수 있다"로 개정(안 제7조)

##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"표창한다"를 "표창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7조 (시상) 새마을의 날에는 "자랑스런 군민"을 발굴하여 군수가 <u>표창한다.</u></p>	<p>제7조 (시상) - - - - - - - - - - <u>표창할 수 있다.</u></p>